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
공고합니다.

2023년 06월 09일

삼학동장인 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윤 *애	윤 *애 1962-10-30	전라북도 군산시 삼학5길 (삼학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3-06-09